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9-137 관련
----------	-----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. 9.

발 의 자 : 김종선 의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제5조제1항 “차도와 인도” 를 “차도와 보도” 로 하고,

제5조제2항 “인도위에” 를 “보도위에” 로 하고,

제5조제3항 “차도 · 인도” 를 “차도 · 보도” 로 하고,

제7조제2호 “인도의 턱과” 를 “보도의 턱과” 로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
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제1항 “차도와 인도”를 “차도와 보도”로 하고,

제5조제2항 “인도위에”를 “보도위에”로 하고,

제5조제3항 “차도·인도”를 “차도·보도”로 하고,

제7조제2호 “인도의 턱과”를 “보도의 턱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5조(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)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. _____ _____ _____ _____ 인도의 턱 _____ 2. 인도위에 _____ _____ _____ _____ 3. 차도·인도에 _____ _____ _____ _____ 4. (생 략) 5. (생 략)	제5조(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)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. _____ _____ _____ _____ 보도의 턱 _____ 2. 보도위에 _____ _____ _____ _____ 3. 차도·보도에 _____ _____ _____ _____ 4. (생 략) 5. (생 략)
제7조(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) 구청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	제7조(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) 구청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

제 정 안	수 정 안
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. 1. (생 략) 2. _____ _____ 인도의 턱과 _____ _____ _____	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. 1. (생 략) 2. _____ _____ 보도의 턱과 _____ _____ _____
3. (생 략)	3. (생 략)